

입법정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1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3
3.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4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개정)	6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8
6. 주택법(개정)	9
7. 유아교육법(개정)	11
8. 재해구호법(개정)	13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5
1.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15
2.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16
3. 전라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16
4.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 조례	17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8
IV. 국외 입법례(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관련)	3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개정 `20. 5. 1 및 시행 `20. 7. 2.]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 개정이유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유통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 제한업종이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도록 하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

[개정 `20. 4. 7. 시행 `20. 7. 8.]

소관부서 :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 개정이유

-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시·도 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3

[개정 `20. 6. 9 및 시행 `20. 7. 10.]

소관부서 :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 개정이유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안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제4항·제5항 신설).

나.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호).

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3호 및 제13조제2항).

라. 시·도지사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4호의2, 제20호의3 및 제24호의2 신설).

마.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조제1항제21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제6호, 안 제9조제1항제21호의2, 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6호의2 신설).

바.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사. 종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대해서는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감리 기술의 발전, 감리 인력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모든 설계·시공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게 함(현행 제17조제1항 단서 삭제).

아.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신설).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19. 1. 15. 및 시행 `20. 7. 16.]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38

■ 개정이유

-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며,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결격사유 및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신설).

- 나.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7조).
- 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출하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품질 등을 기준으로 사육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일방적 사업 중단, 농가지급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를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제7조의3 신설).
- 마.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에는 계열화사업자의 일반현황,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 바.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도록 함(제19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5 [개정 `13. 7. 16. 및 시행 `20. 7. 17.]

소관부서 :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1

■ 개정이유

-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치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바, 시험·검사 기관의 정도관리의 향상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 신설).
- 나. 시험·검사기관이 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의무고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 다. 소송, 행정처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보고서 등에 활용되는 자료는 반드시 정도관리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로 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및 제33조제7의3호 신설).
- 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주택법

6

[개정 `20. 1. 23. 시행 `20. 7. 24.]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 개정이유

-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과장 광고 제한,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며,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이를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 시·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등을 통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의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추가함(제11조제2항제2호 신설).
- 나.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제11조의3제1항).
- 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금지되는 사항을 정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 라.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 마.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제

21조제1항제4호 신설, 제22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사. 시·도지사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5조 및 제56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 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3 신설).

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제7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개정이유

- 유치원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하고,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회계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정·변경 명령 또는 유치원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감시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함(제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의2 신설).
- 나.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도록 함(제8조의3 신설).

다. 교육감이 실시한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와 교육부장관이 실시한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2제5항 신설).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3제5항 신설).

바.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9조의4제1항제3호의2 신설).

사. 교직원이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1조의2제2항).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유치원 목적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자.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추가함(제30조제2항).

차. 관할청은 보조금·지원금 반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유치원의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카. 유치원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제32조제1항제1호).

8

재해구호법

[개정 `20. 1. 29. 시행 `20. 7. 30.]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11)

■ 개정이유

-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도심리지원단은 시·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0.06.04.]



■ 제정이유

- 2016년 경주에서의 규모 5.8의 지진과 2017년 포항에서의 규모 5.4의 지진을 통해 경북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고,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바 있음. 따라서, 지진재해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학생 및 교직원의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 이에, 경상북도 내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설계와 지진재해에 대비한 협력체계 구축,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지진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학교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2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0.06.10.]



■ 제정이유

-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정의 (안 제2조)
-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다. 지원사업 (안 제5조)
- 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안 제6조)

3

전라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20.06.29.]



■ 제정이유

-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중임.
- 성년후견인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 하고 있음.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홍보하고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후견인’ 등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라. 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4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20.06.29.]



■ 제정이유

- 등록제인 여행업에 사각지대가 많아 도 차원의 인증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나. 우수여행업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질병검사 의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므로, 시·구·군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재정 지원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20-0116,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질의요지

- 울주군수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진단 의뢰에 필요한 시료채취 (각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 시료채취에 수반되는 포획·처리·운반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를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참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자연보호활동(제4호사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서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제4호사목)을 시·도 및 시

· 군·자치구의 사무로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법 제34조의6제1항에서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이하 “질병진단기관등의 장”이라 함)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야생동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은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시·군·자치구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감염병 발생과 같이 야생동물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등의 장에게 “의뢰”하는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지는 업무의 성격이나 인력·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하는 데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업무 수행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울주군의 조례로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의뢰를 위한 시료채취 업무를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격이나 인력·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 맡길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법령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데, “시료채취를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를 수행한 민간 전문가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바 예산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4. (생략)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 17. (생략)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 관련)

[의견20-0098, 경기도 화성시]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의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조례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52조의2제1항에서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제1호),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한 분쟁(제2호),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제3호),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제4호),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제5호) 등을 심의·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제52조의3제1항·제2항),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제52조의8), 조정위원회의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집합건물법령에서 확정적·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감정 등의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시행령 제18조제6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2장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9까지)에 신설된 것으로, 이는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집합건물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각 시·도 단위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취지였는바, 이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법률 효과를 발생

시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적 영역의 분쟁들을 시·군·구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도 단위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의·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이 시·도 단위별로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령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심의·조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에서 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화성시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집합건물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한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조정·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법 제52조의9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국제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 행사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의견20-0099, 경상남도 하동군]

이유

- 법령이나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함)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한 후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내용이 권한 범위 내에 있고,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령등에 대해 입법예고하여야 할 대상(제41조), 예고 방법(제42조), 예고 기간(제43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제44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를 하여야 할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입법예고 방법이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의

등 협조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령안의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도 필요한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 심사·조정·사후평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의 사전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제4조), 같은 규정 제5조에서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국제행사 개최준비·진행과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협조·지원·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3호),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인력 및 재원대책(제4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국고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규모나 행사 진행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하동군에서 제정하려는 조례안에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확정된 내용을 기초로 조례안을 입안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소요기간, 개최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전에 조례안 입안 및 입법절차(입법예고 등)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국제행

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 결과에 의해 변경된 사항은 다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하동군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6조제1항)하고 있는바 하동군 조례안과 관련된 국제행사가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경상남도의 경우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차(茶)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입법예고 등)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 ② (생략)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설치)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 및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소속하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2. (생략)
3. 국제행사 개최준비·진행과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협조·지원·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인력 및 자원대책
5. (생략)

4

경주시의회가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 중 지역개발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한 회계연도 내 총 사업비가 같은 회계연도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경주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관련)

[의견20-0114, 경상북도 경주시]

■ 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제39조제1항제2호),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127조제1항) 부여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예산편성 기준 등을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은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해 직접 규율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제1항)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에 관해 「지방재정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편성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주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경주시 특별회계”라 함)의 세출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제1호)이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개선사업(제2호) 등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경주시 특별회계의 세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7조 및 제8호에 따른 한 회계연도 내 사업비 총 규모가 당해 연도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주시 조례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경주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당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부분이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출되어 안전사업이나 환경사업 등 다른 원자력 관련 사업의 운영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한 회계연도에 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출 한도를 제한하려

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해당 규정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 지역개발사업 등에 편성할 수 있는 경주시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상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주시특별회계 세출사업의 종류는 경주시조례안에 의해 비로소 정해지는 것으로서 경주시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경주시특별회계 세출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 경주시조례안에서 정하려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장은 여전히 지역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어느 정도로 편성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그 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를 무의미하게 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시의회가 경주시특별회계 세출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총 사업비가 당해연도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 상한이 경주시장이 예산편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경주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략)

② (생략)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생략)

1. 국내현황

- 2015년 3월 27일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3259호)을 통해 아동에 대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뿐만 아니라 「민법」 제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징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이 포함되는지 그 한계가 모호하고,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4대 전략(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인권 및 참여권과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2. 국외 입법례

① 독일 「민법전」과 「사회법전」

- 독일은 자녀에 대한 체벌금지와 관련하여 원래 「민법전」 제1631조에 체벌에 대한 권리를 부(父)에게 인정하고 있었고 성평등을 이유로 그 이후에 모(母)에게도 인정하였으나, UN아동인권협약이 비준된 1992년에 이르러 이 규정은 무효가 되었다.
- 2000년에 「양육시 폭력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아동은 비

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과 함께 부모 편에서 체벌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 현행 민법전과 같이 “체벌을 비롯해 심리적 상처 및 그 밖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게 되었다.

- 「양육시 폭력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사회법전」에서는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가정 내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사회법전」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부모, 그 밖의 양육권자에게 가정에서의 갈등상황을 폭력에 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회법전 제16조).

② 일본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 2019년 6월 일본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학대방지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아동의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아동 훈육시 체벌을 가하는 행위, 그 밖의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제820조의 규정에 따른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해당 아동을 징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 그리고 일본 정부는 체벌을 허용하는 빌미가 되어왔던 민법상의 ‘징계권’ 규정을 이 법 시행(2020년 4월1일) 후 2년을 목표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③ 뉴질랜드 「Crimes Act 1961」(형법)

- 뉴질랜드는 호주와 달리 가정 내 체벌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07년 개정 형법(the Crimes Amendment Act 2007)에서는 아동의 부모와 해당 아동의 부모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은 유형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행사된 유형력이 해당 상황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i) 해당 아동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ii) 해당 아동이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ii) 해당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관여

하거나 관여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v) 돌봄 및 양육에 부수하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59조제1항).

-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정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3. 시사점

- 최근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는 등의 사건 발생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민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왔고, ‘사랑의 매’를 훈육방법으로 여겨 국가개입을 꺼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체벌과 학대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하지만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이하 ‘UN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도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훈육을 이유로 부모에 의한 체벌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함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독일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전」 개정이 2000년에 이루어졌고, 「사회법전」에서도 가족이 폭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증진할 의무를 관계 당국에게 지우고 있다.
- 일본은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아동학대방지법」을 2020년4월1일부터 시행하고, 우리나라 민법과 같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빌미로 여겼던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제822조)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일본 민법 제822조는 체벌 금지와 연계하여 삭제

되거나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2022년에 수정될 예정이다.

- 뉴질랜드에서는 아동의 부모와 해당 아동의 부모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은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허용되지만, 교정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의 사례는 해당 자녀의 부모나 그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체벌은 자녀에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체벌의 금지화를 법제화하였으나, ‘2018년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이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76.8%)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도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하여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부모가 체벌을 하게 된 동기에 상관없이 체벌은 자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오랫동안 안겨주고 인지발달과 교육적 효과도 별로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 성향의 증대와 범죄행위에 관여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거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